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은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201 발의연월일: 2022. 6. 29.

발 의 자: 강은미 • 류호정 • 민형배

배진교 · 심상정 · 용혜인

유미향 • 이은주 • 장철민

장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강도 역시 세지고 있어, 위험기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기상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. 그러나 현행법은 기상예보 및 특보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, 정확하고 상세한 기상예보 및 특보의 제때 제공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.

이에 기후위기 시대의 위험기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보·특보 생산에 필요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는 예보관의 자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기상예보 및 특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.

아울러,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재난

지원을 위한 기상예보 및 특보의 효율적 생산·전달을 수행하는 국가기 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자 함(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7까지 신설).
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7조의2(예보 및 특보 생산을 위한 감시·분석) ①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의 실황(實況) 감시 업무를 지속 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기상관측 자료
 - 2.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에서 생산한 자료
 - 3. 기상통계 자료
 - 4. 그 밖에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
 -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위한 감시·분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의3(예보 및 특보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 등) ①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생산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1. 예보 및 특보 생산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 조사
 - 2. 예보 및 특보 생산 관련 기술의 연구·개발

- 3. 기상현상의 실황 감시와 분석, 예보 및 특보 생산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- 4. 관계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 · 정보 등의 교류
-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의4(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) ①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치예보모델(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)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 자료를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의5(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) ① 예보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 - 1.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
 - 2.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
 - 3.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
 - ② 예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제17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위한 감시 · 분석
 - 2. 예보 및 특보의 생산 및 발표
 - 3. 예보 및 특보의 대상이 된 기상현상의 실황과 원인, 예보 및 특보의 판단 근거, 예보 및 특보 생산에 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환경부

령으로 정하는 정기적인 사후분석

- 제17조의6(예보관의 교육 및 전문성 강화) ① 기상청장은 예보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하고, 예보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예보관은 정기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의7(국가기상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기상청장은 국민의 생명 ·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 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·전달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국가기상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기상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전국 기상현상의 실황 확인
 - 2.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국내 및 주변 국가의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의 감시와 국내 영향 가능성 분 석
 - 3. 전국 대상 예보 및 특보의 생산과 발표
 - 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 요청하는 기상정보 지원
 - ③ 기상청장은 인구 분포, 지형, 도시 · 농촌 등 지역 특성, 교통 밀집

도 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의 생산·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기상청에 지역기상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상센터 및 지역 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보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)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	제17조의2(예보 및 특보 생산을
		위한 감시·분석) ① 기상청장
		은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기 위
		하여 기상현상의 실황(實況) 감
		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
		야 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에
		대한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.
		<u>1. 기상관측 자료</u>
		2.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수치
		예보시스템에서 생산한 자료
		<u>3. 기상통계 자료</u>
		4. 그 밖에 예보 및 특보를 생산
		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
		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
		의 생산을 위한 감시ㆍ분석에
		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
		<u>로 정한다.</u>
<u> <신 설></u>		제17조의3(예보 및 특보 생산을
		위한 기술 개발 등) ① 기상청
		장은 예보 및 특보의 생산과 관
		런된 기술을 개발하고 그 수준
		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
		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
		<u>1. 예보 및 특보 생산 관련 기술</u>

동향 및 수요 조사

- 2. 예보 및 특보 생산 관련 기술 의 연구·개발
- 3. 기상현상의 실황 감시와 분석, 예보 및 특보 생산 등을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및 운영
- 4. 관계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 력 · 정보 등의 교류
-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 의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 로 정한다.

제17조의4(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) ①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치예보모델(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)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의5(예보관의 자격 및 업

<신 설>

<신 설>

무) ① 예보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 추어야 한다.

- 1.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기본 교육을 이수한 사람
- 2.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
- 3.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사람
- ② 예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제17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 보의 생산을 위한 감시·분석
- 2. 예보 및 특보의 생산 및 발표
- 3. 예보 및 특보의 대상이 된 기 상현상의 실황과 원인, 예보 및 특보의 판단 근거, 예보 및 특보 생산에 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정기적인 사후분석

제17조의6(예보관의 교육 및 전문 성 강화) ① 기상청장은 예보관 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하고, 예보관이 업무 수행

<u><신</u>설>

<신 설>

- 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 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예보관은 정기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과 전 문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 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7조의7(국가기상센터의 설치 ·운영 등) ① 기상청장은 국민 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위험 을 일으킬 수 있는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를 효율 적으로 생산·전달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국가기상센터를 설치 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기상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전국 기상현상의 실황 확인
 - 2.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국내 및 주변국가의 기상현상의실황 및 그 변화의 감시와 국내 영향 가능성 분석

- 3. 전국 대상 예보 및 특보의 생 산과 발표
- 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 리주관기관에서 요청하는 기 상정보 지원
- ③ 기상청장은 인구 분포, 지형, 도시·농촌 등 지역 특성, 교통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 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의 생산·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기상청에 지역기상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상센터 및 지역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 정으로 정한다.